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의무〉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75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신고 기한 및 신고 내용 구체화 등	2
2. 수사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의무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9.

다.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신고 기한 및 신고 내용 구체화 등(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을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u>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 <u>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u> ----- ----- ----- -----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u> ⑤ -----<u>방법</u>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침해사고 신고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이미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아래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¹⁾이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 내용 중 해당 부분은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임.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1항에서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로 규정하는 반면, 통과된 대안에서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규정하여 신고 기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개정안은 제4항에서 ‘즉시’로 규정한 것을 대안에서는 ‘지체 없이’로 규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

1) 의안번호 제2214896호

2. 수사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의무(안 제48조의3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의3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② ----- ----- ----- ----- ----- ----- <u>하</u> 며, <u>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할 뿐²⁾, 별도로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 함.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침해 사고 관련 수사의 신속한 착수, 침해사고 확산 방지 또는 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조직적 해킹 등 범죄와 연계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무 내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일률적으로 관계

2)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행정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과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타 기관에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경미한 사고까지 일률적으로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조사와 정보 과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행정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예산을 보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우선적으로 사고 대응을 수행한 후, 그 결과와 필요성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임.
- 한편,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신고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단순히 관계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서 실효적인 수단이 아님.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우선 해당 제도의 시행 경과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회의 통과 법안은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은폐를 막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바, 수사기관 통보 명시 여부는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하고,

안 제48조의3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게 침해사고 사실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대응조치 사
실’까지도 알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